

발명장려사업 추진 및 세부

특허청고시 제88~4호 의거 새해

특허청 고시 제88-4호 발명장려사업 추진 요령에 의거한 발명장려사업 추진 세부요령이 발표되었다.

이 요령의 주요내용은 ▲발명장려관 설치 운영 ▲전국우수발명품 및 학생발명품전시회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비 지원 ▲발명품 기업화 추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국제전시

회 출품등 지원 ▲발명의 날 기념 전국발명장려대회 개최등의 세부적인 내용이다.

요령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국제전시회의 출품비가 80%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발명의 날 기념 전국발명장려대회의 시상 대상폭이 크게 넓어졌다.

전문을 2회로 나눠 소개한다. <편집자 주>

특허청 고시 제88-4호 내용	세 부 요 령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발명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세발명자'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로서 발명, 고안을 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학생발명반'이라 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학생발명활동반으로서 특허청에 신고된 발명반을 말한다. 4. '외국출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에 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5. '국제전시회'라 함은 외국에서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발명품 및 신기술전시회로서 한국발명특허협회가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출품업무를 주관한 전시회를 말한다. <p>제3조 (발명장려사업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p>	<p style="text-align: center;">발명장려사업 추진 세부요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특허청 고시 제88-4호 제4조 규정에 의거 발명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운영세칙) ①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p>

요령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부터 국제 전시회 출품비 지원등 다양

특허청 고시 제88-4호 내용	세 부 요 령 내 용
<p>는 발명장려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장려관의 설치·운영 2.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 개최 3. 우수발명시작품제작비 지원 4. 외국출원비용 지원 5. 국제전시회 출품 지원 6. 학생발명반 활성화 지원 7. 발명품기업화추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 <p>제 4 조 (한국발명특허협회규정) ①제3조의 발명장려사업중 한국발명특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그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수 있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p> <p>제 2장 발명장려관의 설치·운영</p> <p>제 5 조 (발명장려관의 설치·운영) ①발명품의 상설전시 등 사업을 위하여 협회에 발명장려관을 설치, 운영한다.</p> <p>②특허청장은 발명장려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 6 조 (발명장려관의 사업) 발명장려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품의 상설전시사업 2. 발명의 기업화를 위한 상담 및 유통알선사업 3. 기타 발명의 연구 및 장려에 관한 사업 	<p>제 2장 발명장려관 설치·운영</p> <p>제 3 조 (설치장소) 발명장려관은 서울시내에 설치하고 한국발명특허협회 사무실과 동일할 소재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장소를 변경할시에는 이전된 주소지를 적용한다.</p> <p>제 4 조 (설치공사) 발명장려관의 설치공사는 정부 공사 입찰규정에 의한다.</p> <p>제 5 조 (설치·운영) 발명장려관은 국민들의 발명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제공하며 발명의 기업화 실시알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실 및 상담실, 자료실, 상설전시실등으로 구분 운영할 수 있다.</p> <p>제 6 조 (연구실) 회장은 발명에 관심있는 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자료를 비치하고 발명연구실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 7 조 (상담실) 발명의 기업화알선, 발명품의 매매, 수출등의 유통 상담과 금융지원을 알선하기</p>

특허청 고시 제88-4호 내용

세 부 요 령 내 용

위하여 발명장려관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 (운영관리) ①회장은 발명장려관에 관리요원을 두어 특허청 고시 제88-4호 제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취급관리토록 한다.
②관리요원은 소관업무의 운영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한다.

제 9 조 (출품대상) 발명장려관의 출품대상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발명, 고안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공업소유권법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 고안품
2. 우수발명시작품
3. 해외전시회 수상품
4. 기타 전시가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명발, 고안품

제10조 (출품신청) 발명장려관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출품규격 및 진열기간) ①출품물의 규격은 부피 1m³, 무게 70kg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이규격을 초과하거나 특수시설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실물이 아닌것은 사전에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발명품의 진열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장려관의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전시품 선정심사위원회) ①회장은 전시품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특허청관계관, 법리사, 학계 및 업계, 협회 상근 이사등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회 상근부회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가 전시품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발명의 기술적 우수성
2. 발명의 기업화 가능성
3. 발명의 양도, 실시하여 가능성
4. 발명의 실권여부

③전시품의 선정순위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한다.

제13조 (발명품의 반입 및 반출) 발명장려관에 출품이 확정된 자는 (계약서식 1호)을 체결하고 반입(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된 발명품을 일시 반출하고자 할때는 회장의 별도승인에 의한다.

제14조 (발명품 진열) 회장은 발명사상양양 및 장

특허청 고시 제88-4호 내용

세 부 요 령 내 용

터등을 위하여 우수발명품, 발명의 기업화 성공사례품, 기타 발명장려를 위한 자료나 물품등을 전시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 발명품전시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명의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수장치가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19조 (개관) ①발명장려관은 공휴일, 국경일과 회장이 지정할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개관시간은 09:30부터 폐관시간은 평일은 17:00, 토요일은 12:30까지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관 및 폐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발명품대여) 국가기관 또는 기타 단체나 기업에서 발명품의 대여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출품자와 협의후 일정기간 대여할 수 있다.

제18조 (발명품의 판매알선) 특허청고시 제88-4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자의 희망에 따라 협회는 발명품의 판매를 알선할 수 있다.

제19조 (발명장려관의 이용과 손해배상 등) ①발명장려관 출품자, 이용자 또는 관람자가 이 요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회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명장려관 출입중단
2. 발명장려지원업무의 중지
3.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요구

②발명장려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20조 (안전관리) ①전시자가 위험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험물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반입자 책임으로 하고 위험물에 관한 제반사항은 해당 법령에 준한다.

제21조 (관람규칙) 관람자는 발명장려관내에서 관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시물품 파손행위의 금지
2. 고성방가 금지
3. 기타 발명장려관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금지

(2月號에 계속)

발 명 은 국 력 이 다!